

제33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3069)

2025. 09. 0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의안번호 3069

I. 동의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안경과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시장
- 나. 제 안 일 : 2025년 8월 11일
- 다. 회 부 일 : 2025년 8월 14일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시복지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구 분	시설현황	
본 관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5층, 8~10층) - 전용면적 : 3,665m^2 - 주요시설 : 정책연구센터, 평가인증센터, 고립예방센터, 사회서비스지원센터, 경영기획실, 감사실 등	
흑석동 별 관	-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 원불교 소태산기념관(6층) - 전용면적 : 814.64m^2 - 주요시설 : 금융복지센터, 복지교육센터, 기능보강지원센터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등	

○ 관련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주요사업

-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복지 분야 평가·심사 및 인증
- 복지 분야 교육 및 자문
- 복지 분야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다. '26년 총 소요예산(안) : 82,537,356천원

라. '26년 예산 산출근거(안)

○ 사 업 비 : 56,772,498천원

○ 기관운영비(인건비, 운영경비 등) : 25,764,858천원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마. 출연의 필요성

-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및 확산,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강화, 지역중심 복지통합 서비스 지원, 시민 일상 속 복지욕구 대응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복지공동체 서울을 만들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Ⅱ .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¹⁾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²⁾에 따라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이하 “복지재단”)의 2025년 회계연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2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

1.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개요 및 현황

- 복지재단은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함으로써 서울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³⁾ 및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2003년 설립된 재단법인 (비영리공익법인)임.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가. 조직 및 인력

- ‘25년 7월 현재 복지재단은 2실, 3본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 상 세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서울시 복지재단 정·현원

(‘25. 7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대표이사	소계	일반직·특정직						
				1급	2급	3급	4급	5급 이하	미화직	임피제 별도직급
정원	196	1	195	2	10	23	29	129	2	-
현원	196	1	195	2	10	21	31	128	2	1

2. 출연금 추이 및 예산 현황

가. ‘25년 세입 현황

- 복지재단의 ‘25년도 총 세입예산은 845억 6천만원으로 ‘24년 791억 3천만원 대비 54억 3천만원(7% 증)이 증가하였으며, 올해 출연금은 739억 3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87%임.

〈표〉 최근 3년간 복지재단 출연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예산액		비율	
	총사업비	출연금	총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	전년도 대비 출연금 증가율
2023	81,015	75,855	93%	49%
2024	79,131	72,354	91%	△5%
2025	84,563	73,934	87%	2%
총 액	244,079	222,143	90%	-
평 균	81,570	74,048	90%	-

- 복지재단의 세입예산은 지난 5년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재단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출연금의 지속적인 증가(20년 372억원 대비 ‘25년 739억원)로 인한 것임.

〈표〉 복지재단 ‘25년도 세입예산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예산(B)	2025년 예산(A)	증감액(C) (A-B)	증감율 (C/B)
합 계		79,130,950	84,563,036	5,432,086	7%
출연금수입		72,353,520	73,934,393	1,580,873	2%
재단자체수입		6,777,430	10,628,643	3,851,213	57%
	사업수입 (대행사업)	870,418	835,461	△34,957	△4%
	사업외수입	850,742	846,879	△3,863	△0.5%
	잉여금수입	3,202,932	7,090,645	3,887,713	121%
	기부금수입	50,000	20,000	△30,000	△60%
	잡수입	1,803,338	1,835,658	32,320	2%

나. ‘25년도 세출 현황

- 복지재단의 세출예산은 845억 6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3천만원이 증가(7% 증)하였음.
- 증감률이 가장 높은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 사업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한 것에서 기인함.
 - 편성 내역은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 (428,513천원 증, 전년 대비 190% 증), 인력 채용을 위한 예비비 편성 (397,753천원 증, 전년대비 2,023% 증) 으로 편성됨.
 - 해당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돌봄 종사자,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의 모형을 개발하고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강화하며, 돌봄종사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임.

〈표〉 '25년도 복지재단 세출예산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예산(B)	2025년 예산(A)	증감액(C) (A-B)	증감율 (D) (C/B)
합 계		79,130,950	84,563,036	5,432,086	7%
연구개발 및 평가·인증·심사 고도화		5,027,311	2,923,781	△2,103,530	△42%
	서울시 복지정책 연구개발 및 데이터체계 구축	3,531,226	1,706,903	△1,824,323	△52%
	서울형 평가 운영	700,864	467,683	△233,181	△33%
	서울형 인증 지원	332,588	271,910	△60,678	△18%
	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462,633	477,285	14,652	3%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복지인재 양성		3,058,578	4,583,345	1,524,767	50%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	225,650	654,163	428,513	190%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지원	182,361	150,782	△31,579	△17%
	가족돌봄청년 지원	600,000	433,598	△166,402	△28%
	서울시민 외로움 예방 및 지원	-	796,006	796,006	-
	사회적고립은둔가구 대응지원	261,131	589,670	328,539	126%
	사회적고립 예방 민관협력 지원	146,694	291,353	144,659	99%
	사회적고립은둔가구 스마트기술 지원	1,083,741	1,051,426	△32,315	△3%
	사회복지 인재양성	559,001	616,347	57,346	10%
자산형성 및 금융·법률 지원강화		2,295,724	1,954,065	△341,659	△15%
	복지법률서비스 지원과 사회권 보장	126,988	111,226	△15,762	△12%
	금융·복지의 융합적 상담과 복지서비스 운영	805,845	555,017	△250,828	△31%
	서울형 자산형성사업 운영지원	1,362,891	1,287,822	△75,069	△6%
수탁(대행)사업		870,418	835,461	△34,957	△4%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400,000	400,000	-	-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운영	470,418	435,461	△34,957	△7%
기관운영비		20,818,758	21,235,571	416,813	2%
	인건비	13,745,688	13,675,592	△70,096	△1%
	운영경비	7,073,070	7,559,979	486,909	7%
성과급		1,727,481	1,818,330	90,849	5%
	성과급	1,727,481	1,818,330	90,849	5%
예비비		19,660	417,413	397,753	2,023%
	예비비	19,660	417,413	397,753	2,023%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매칭기금 관리		44,329,900	49,912,010	5,582,110	13%
	서울꿈나래통장	1,301,650	1,191,260	△110,390	△8%

구 분		2024년 예산(B)	2025년 예산(A)	증감액(C) (A-B)	증감율 (D) (C/B)
합 계		79,130,950	84,563,036	5,432,086	7%
	희망두배 청년통장	40,629,750	46,307,400	5,677,650	14%
	장애인 이룸통장	2,398,500	2,413,350	14,850	1%
서민 취약계층 지원사업		810,000	780,000	△30,000	△4%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760,000	760,000	-	-
	서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50,000	20,000	△30,000	△60%
청년 자립토대지원금		150,000	100,000	△50,000	△33%
	청년 자립토대지원금	150,000	100,000	△50,000	△33%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사업		20,000	-	△20,000	-
	고립가구 사회도약 지원사업	20,000	-	△20,000	-
기금관리위원회 운영관리		3,120	3,060	△60	△2%
	기금관리위원회 운영지원	3,120	3,060	△60	△2%

- ‘25년 복지재단 전체 세출예산 845억 가운데 연구관련 예산은 17억 (전체 예산의 약 2%) 으로, 향후 복지재단의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복지분야 평가·심사 및 인증은 복지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주요 사업으로, 재단은 서울시 복지정책과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25년 재단 주요 신규사업 목록은 다음과 같음.

〈표〉 복지재단 ‘25년 주요 신규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 예산 (단위: 천원)
1	외로움 안녕 120 운영	•목적 : 외로움안녕 상담콜 운영 통한 기초상담 및 기관연계 추진 •내용 : 상담콜센터 운영 통한 도움요청, 기초상담, 정보제공 등	692,914
2	서울 안녕 캠페인	•목적 : 외로움고독은둔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기여 •내용 : 캠페인 주간 운영, 영상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등	103,092
3	고립예방플랫폼 고도화	•목적 : 고립예방플랫폼 <똑똑> 고도화 통한 정확한 정보제공 •내용 : 외로움고독은둔 지원 정보 프로그램 안내 및 기능 고도화 등	122,420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 예산 (단위: 천원)
4	외로움고독은둔 대응 홍보	• 목적 : 외로움고독은둔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및 대응력 강화 • 내용 : 외로움고독은둔 검색어 상위 노출, 공모전 운영 및 전시	144,004
5	서울 연결 처방	• 목적 : 정서적 고립상태인 고립가구 대상 사회적 연결 서비스 지원 • 내용 : 고립은둔가구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평가	262,280
6	사회적고립가구 발굴 및 예방협의체 운영	• 목적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중심 민관 협의체 운영 • 내용 : 자치구 단위 고독사 예방 대응 방안 논의 및 계획 등	75,000
7	은둔거부가구 맞춤형 지원사업	• 목적 : 지역 기반 은둔거부 고립가구 대상 개별 프로그램 지원 • 내용 : 은둔거부가구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사업운영 지원	195,542
8	고립가구 당사자 참여형 일자리 사업	• 목적 : 치유활동가 양성 통한 고립가구 정서적 지지 모델 구축 • 내용 : 치유활동가(고립 경험 중장년당사자) 모집, 프로그램 진행 등	73,954
9	나눔네트워크 아름다운 동행	• 목적 :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개발 통한 나눔네트워크 구축 • 내용 : 지역 내 민간자원 개발 및 나눔협약 통한 서비스 연계	83,544
10	사회서비스지원센 터 운영	• 목적 : 사회서비스 전담 지원기구 설치 통한 민간 자원 및 육성 등 • 내용 : 안심돌봄콜센터 운영 및 돌봄서비스 고도화 지원 등	444,550

- 복지재단에서는 서울시에서 수행중인 핵심 복지정책들의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있음. 25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외로움·고립은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채널과 외로움 예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외로움 안녕 120 운영’, ‘서울 안녕 캠페인’, ‘고립예방플랫폼 고도화’, ‘외로움고독은둔 대응 홍보’, ‘서울 연결처방’ 등 전체 10개 신규사업 가운데 5개가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집행기관에서는 신규 정책사업 추진시 복지재단과의 협업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향이 있음. 복지재단은 연구부서와 사업부서가 함께 있

는 만큼, 사업현장에서의 의견이 연구에도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 하겠음. 복지재단에서는 신규사업 추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부서 등을 활용해 이에 대한 철저한 사업효과의 검증과 향후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종합검토 의견

- 복지재단의 출연 근거⁴⁾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⁵⁾ 등 법령상의 근거와 설립 목적 및 기능 등을 검토할 때, 복지재단의 2026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금번 심사하는 출연 동의안은 예산편성을 위한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동의안 작성시점 기준 내년도 소요예산안 82,537,356천원)으로 이후 예산안 심의 시, 기 추진사업의 효과성 및 신규사업 추진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또한, 시정사업 및 직접사업 추진 시에도 재단의 연구 역량을 살려 해당 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향후 시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전 문 위 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도미화	02-2180-8147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